제1014회 신설·강화규제 예비심사 결과

no.	법령명	규제내용	결과
1	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안(금융감독원)	1.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위험가중치 하한 상향조정(강화) ㅇ 주거용 주택담보대출의 위험가중치 하한을 15%에서 “20%”로 상향하고, 동 변경 규정은 ’26.1.1. 이후 신규취급분부터 적용 ▶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17조	비중요
2	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 개정안(금융감독원)	1. 레버리지비율 산정방식 변경(강화) ㅇ 증권사 레버리지비율(총자산/자기자본) 산출시 파생결합사채 발행 잔액을 비고난도·국내지수 파생결합증권과 동일한 수준으로 총자산에 가산 ▶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 제2-9의2	비중요
3	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(국토교통부)	1. 거주의무 주택의 LH 매입 예외사유 신설(강화) ㅇ 부동산 투자 손실 전가 목적으로 매입신청제도를 악용할 수 없도록 아래와 같이 매입 예외(거부)사유 신설 * (현행) LH 부도·파산시 매입 거부 가능 → (개정) 현행 + 인근 시세 대비 매입비용이 높으면 거부 가능 - 단, LH로부터 매입 거부를 통보받은 시점부터 거주의무기간 종료일까지 해당 주택에 거주한 것으로 간주(예외인정사유 신설) ▶주택법 시행령 제60조의2	비중요

no.	법령명	규제내용	결과
4	건설기계 수급조절 시행 개정안 (국토교통부)	1.건설기계 신규 등록 제한(신설) ㅇ 수급조절계획 시행일로부터 수급조절 대상 건설기계의 사업용 신규등록을 제한('26.1.1.~'27.12.31) ㅇ (콘크리트믹서트럭) 신규등록 제한 유지 ※ 건설경기 전망 부진으로 믹서트럭 공급이 충분할 것으로 전망 ㅇ (소형 타워크레인) 신규등록 제한 유지('20.7.31 이전 형식신고된 기종) ※ '20년 7월 31일 이전 간략한 형식신고로 도입된 기종은 장비결함 우려 등 안전문제가 있어 신규등록을 제한 ㅇ (덤프트럭) 제한적 수급조절 지속, 매년 등록대수의 3% 규모로 사업용 신규등록 허용 ※ 건설경기 전망 부진으로 수요가 크게 증가하진 않을 전망이나, 최근 등록대수 감소로 덤프트럭 공급이 부족할 가능성 ㅇ (콘크리트펌프) 수급조절 해제 ※ 최근 등록대수의 빠른 감소로 콘크리트펌프 공급 부족이 예측되며, 지난 수급조절 기간에 허용된 신규 물량이 소진되지 않는 등 제한의 필요성이 적음 ▶건설기계 수급조절 시행 전체	중요
5	선내 의약품 등의 비치 기준 개정안(해양수산부)	1. 선내 비치 의무 의약품 추가 및 항행시간 24시간 초과 국제선의 비치수량 가감기준 마련(강화) ㅇ 선내 비치 의무 의약품 추가 및 항행시간 24시간 초과 국제선의 비치수량 가감기준 마련 ▶선내 의약품 등의 비치 기준 제2조	비중요

no.	법령명	규제내용	결과
6	항만 출입절차에 관한 규정 개정안(해양수산부)	1. 항만시설의 출입 제한(강화) ㅇ (제재근거 마련) 국가보안시설인 항만시설의 보안을 유지하기 위해, 출입을 제한할 수 있는 조건을 세분화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출입증의 회수 또는 해당 항만시설에 대해 출입제한 조치가 가능하도록 근거규정 마련 – (위반사항) 출입증 도용, 출입증 미반납, 안전교육 미이수, 위해물품 반입, 검문검색 및 지시 불응, 보안사항 촬영 등 – (제재수단) 위반사항 해당 시 출입증 발급제한, 출입증 회수*, 항만 출입제한 등 위반유형에 따라 적절한 수단 적용, 다만 제재수준은 항만별로 자체 적용 * 상시출입증 회수 시 임시출입증 발급받아 항만 출입가능 ※ 현재 각 항만은 제재조치(출입제한 기간 등)를 별도로 마련하고 있으나, 제재수준 등이 지방해양수산청, 항만공사, 민간 운영사 별로 상이한 상황으로 통일성 · 일관성을 위해 향후 별도 지침 등 검토 예정 ㅇ (제재정보 공유) 출입제재자 정보를 다른 항만에서도 공유할 수 있도록 하여, 전국 항만에서 보안상황이 원활하게 공유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* 국정원에서 제재정보가 타 항만에도 공유될 수 있도록 근거규정 요청 ▶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제33조 ▶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▶항만 출입절차에 관한 규정 제11조	비중요
7	피난기구의 화재안전성능기준(NFPC 301) 개정안(소방청)	1. 피난기구의 화재안전성능기준(NFPC 301) 일부개정(강화) ㅇ 숙박시설의 경우 객실마다 하나의 완강기 또는 수용인원 수 이상의 간이완강기를 추가로 설치하도록 함 ▶피난기구의 화재안전성능기준(NFPC 301) 제5조	비중요

no.	법령명	규제내용	결과
8	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(기후에너지환경부)	1.완구류에 대한 재활용의무(신설) ㅇ 생산자책임재활용 의무대상 제품으로 완구류를 추가 ▶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	비중요
		2.완구류의 재활용기준비용(신설) ㅇ 완구류의 재활용기준비용(재활용부과금의 산출 기준)을 ㎏당 343원으로 규정 ▶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	비중요
9	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(기후에너지환경부)	1.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(EPR) 품목별 재활용기준비용 개정(강화) ㅇ 재활용부과금의 산출기준이 되는 재활용기준비용 개정(현실화) – 시장 확대 및 재활용제품 가격 상승 등에 따라 대다수 품목(30개)의 기준비용 하향 – 다만, 재활용시장 축소 및 소규모 처리 등에 따라 일부 품목(4개, 일반팩·멸균팩·리튬1차·니켈수소 전지)은 기준비용 상승 ▶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	비중요